

해양양식어업시설·해양수산물종자생산업시설의 설치규모(제14조의3제3항제2호 관련)

구분		양식어업의 종류	양식방법	어장구역의 한계 (단위: 헥타르)	
				어촌계 (지구별조합)	어촌계 외의 자
해양 양식 어업 시설	해조류 양 식어업	1. 수하식 양식어업	가. 건홍식 나. 연승식	1 이상 1 이상	1 ~ 20 1 ~ 20
		2. 바닥식 양식어업	투석식	1 ~ 30	1 ~ 20
	패류 양식어업	1. 수하식 양식어업	가. 간이식	1 ~ 5	1 ~ 5
			나. 연승식	1 ~ 20	1 ~ 20
			다. 뗏목식	1 ~ 30	1 ~ 20
		2. 바닥식 양식어업	가. 살포식		
			1) 간석지	1 ~ 100	1 ~ 20
			2) 천해	1 ~ 30	1 ~ 20
			나. 투석식 등		
			1) 간석지	1 ~ 20	1 ~ 20
			2) 천해	1 ~ 30	1 ~ 20
		3. 가두리식 양식어 업	다. 침하식	1 ~ 10	1 ~ 5
			가두리식	0.5 ~ 20	0.5 ~ 10
	어류등 양 식어업	1. 수하식 양식어업	가. 연승식	1 ~ 20	1 ~ 20
			나. 뗏목식	1 ~ 20	1 ~ 20
		2. 바닥식 양식어업	가. 살포식		
			1) 간석지	1 ~ 100	1 ~ 20
			2) 천해	1 ~ 30	1 ~ 20
	복합 양식어업	1. 수하식 양식어업	나. 투석식	1 ~ 20	1 ~ 20
			다. 침하식(어류는 제외 한다)	1 ~ 20	1 ~ 20
		2. 바닥식 양식어업	가. 연승식	1 ~ 20	1 ~ 20
			나. 건홍식과 연승식(해조 류와 패류만 해당한다)	1 ~ 20	1 ~ 20
		2. 바닥식 양식어업	가. 살포식(패류의 전복 과 어류 등의 해삼만 해당한다)	1 ~ 30	1 ~ 20
			나. 살포식과 투석식(패	1 ~ 100	1 ~ 20

			류만 해당한다)		
		3. 혼합 양식어업	가. 건홍식과 살포식(해조류와 패류만 해당한다)	1 ~ 100	1 ~ 20
			나. 연승식과 천해투석식(해조류와 패류만 해당한다)	1 ~ 20	1 ~ 20
			다. 침하식과 연승식(해조류와 패류만 해당한다)	1 ~ 10	1 ~ 5
			라. 가두리식과 연승식(해조류와 패류만 해당한다)	1 ~ 10	1 ~ 10
			마. 가두리식과 살포식(패류 중의 전복과 어류등의 해삼만 해당한다)	1 ~ 10	1 ~ 10
			바. 가두리식과 투석식(패류 중의 전복과 어류등의 해삼만 해당한다)	1 ~ 5	1 ~ 5
	협동 양식어업		사. 수평망식과 살포식(수평망식으로 양식하는 굴과 그 밖의 패류만 해당한다)	1 ~ 5	1 ~ 5
		4. 가두리식 양식어업	가두리식(패류·어류등)	0.5 ~ 5	0.5 ~ 5
		양식어업의 종류, 양식방법, 어장구역의 한계는 해조류양식어업, 패류 양식어업, 어류등양식어업 및 복합양식어업에 따른다.			
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				1 이상	1 이상

비고

1. 해상양식어업시설의 구분·종류 및 방법은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2. 가두리식 양식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(3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를 포함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
3. 복합양식어업 중 가두리식 양식어업은 2017년 5월 30일 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

른 허가를 받아 어류등 양식어업 중 가두리식 양식어업을 설치한 자에 한정하여 기존 시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위할 수 있다.